

損害保險會計의 會計理論的 考察과 改善方向

李元熙 · 鄭珉根

(安建會計法人 · 公認會計士)

◀ 目 次 ▶

- I. 序 論
 - 1. 目的과 範圍
 - 2. 方法論
- II. 保險會社 經營과 保險會計의 性格
 - 1. 保險의 概要
 - 2. 保險會社 經營의 特徵
 - 3. 保險會計와 企業會計基準과의 相關關係
- III. 損害保險會計의 構造
 - 1. 保險收入會計
 - 2. 保險原價會計
 - 3. 非常危險準備金の 積立
- IV. 우리나라 損害保險社 會計制度和
미국 FASB보고서 #60 및 97과의 比較
- V. 우리나라 損害保險會計制度의 改善方向

일반기업의 財務會計는 複式簿記가 개발된 이래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제조업 중심의 회계제도와 더불어 금융업, 기타 특수업종이 발달하여 산업내 위치가 상승하고 특수업종에 대한 財務報告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特殊業種에 대한 會計制度도 財務會計制度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特殊業種의 會計制度의 발달은 업종의 特殊性과 專門人力의 부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會計學者나 會計專門家의 입장에서는 업종 자체의 특수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동업종에 종사하는 회계담당 직원의 경우 회계실무를 이론화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다.

保險業의 財務會計에 있어서도 다른 특수업종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保險學界에서는 대체로 보험의 法律的, 經濟的, 數理的 側面에서 연구하고 있고, 保險業界에서는 보험 그 자체의 업무에 있어서 실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보험업의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會計學界

I. 序 論

1. 目的과 範圍

에서는 保險業의 特殊性으로 주요 논제로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保險業의 財務會計는 이론적 체계의 정립없이 保險業法, 保險業法 施行規則, 生命保險會社의 會計規程 및 損害保險會社의 會計規程(이하 “회계규정”이라 칭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적인 통제 목적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회계적인 개념보다는 법적인 개념에 의거 제정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모든 財務去來를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保險業의 財務會計上의 未備點은 企業會計基準을 준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損害保險會計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保險業과 保險會社 經營의 性格을 먼저 검토하고 현행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損害保險會計 關聯 基準들을 會計理論의 체계에 맞추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損害保險會計制度和 美國 保險業의 財務會計基準인 FASB報告書 #60 및 97의 손해보험영업회계 관련 기준을 요약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損害保險會計制度的 改善方向에 대해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2. 方法論

본고의 논제의 성격상 實證分析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이미 연구·발간된 유사논제의 논문을 조사 분석하고 保險業과 會計學에 대하여는 관련 서적을 참고로 할 것이다. 또한 美國 保險會社의 會計基準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관계서적과 FASB #60, #97등을 참고할 것이다.

II. 保險會社 經營과 保險會計의 性格

1. 保險의 概要

本稿의 目的이 보험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룰 필요성은 없으나, 保險業을 경영하는 企業의 性格과 會計制度的 特性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연결을 위해 간단히 보험의 성격을 언급하고자 한다.

保險의 定義에 대하여 여러 보험학자에 의해 달리 정의되고 있으나 국내학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이 있다.

“保險이란 危險의 結合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社會的 施設이라 할 수 있다. 즉, 保險은 다수의 同質的인 危險을 한 곳으로 모으는 행위인 危險의 結合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부터 얻게 되는 實際 損失을 다수위험의 결합으로부터 얻게 되는 平均 損失로 대처하게 된다”¹⁾

“保險이란 일정한 偶然的 事件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經濟不安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준비의 社會的 形態로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確率計算에 의거 賦出을 부담하는 經濟施設이다”²⁾

상기 두가지 保險의 定義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보험의 기능으로서 위험의 결합을 통한 分散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시설 또는 경제적 시설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기능은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保險會社의 經營上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1) 方甲洙, 最新保險學, 博英社, 서울 1990, p24

2) 韓東湖, 保險學, 博英社, 서울 1971, p39

2. 保險會社 經營의 特徵

企業의 經營 目的이 正當한 利潤追求라는 것이 여러가지 비판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 왔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한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正當한 利潤追求의 動機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험의 개요에서 살펴 보았듯이 保險會社가 提供하는 商品이 보험으로서 社會的 施設 또는 經濟的 施設로서 公共性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정리를 거친 보험회사의 경영목적으로는 보험회사의 營利追求(營利性)와 보험가입자의 效用 充足(公共性)³⁾으로 압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經營原則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危險에 관한 原則

보험회사 경영의 중요 대상은 危險을 引受하고 적절히 分散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모든 위험을 인수할 수는 없으며 보험회사의 조직이나 동업조직을 통하여 관리가능한 위험만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가능한 危險의 要件으로 는 다음이 있다.

가. 大量危險 : 보험은 大數法則에 의한 확률계산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제도이다. 보험제도의 合理性은 대수법칙에 의하여 장기간의 재해나 사고의 발생경향을 통계적, 대량적으로 처리하여 이것에 근거하여 장래의 재해발생을 추론하는데 있

다. 따라서 大量危險의 存在 즉 다수의 경제주체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同質危險 : 대수의 법칙에 의한 保險料計算의 適切性을 기하기 위해 危險集團의 同質性이 요구되며, 보험종목이 다양한 것은 분류된 同質危險別로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다. 危險分散 : 동질위험이라고 하여도 위험의 크기가 같을 수 없으며 보험회사 經營의 安定性을 유지하기 위해 大型 危險의 分散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再保險制度, 共同保險制度 등이 있다.⁴⁾

2) 收支에 관한 原則

수지에 관한 원칙에는 保險料 適正의 原則, 保險給付 適正의 原則, 給付·反對給付 均等의 原則 등을 포함하여 收支相等의 原則으로 요약되며,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⁵⁾

가. 한 종목의 보험에 있어서 純保險料의 총액과 지급된 保險金의 總額間에 均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질 동형의 위험사건에 관하여 형성되는 보험집단에 대하여 필요한 保險金의 總額과 개별보험료의 純保險料의 總額이 서로 과부족이 없는 均衡 狀態를 뜻한다.

나. 한 종목의 보험에 있어서 總保險料(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와 保險金 總額 및 그 보험의 운영관리에 소요된 費用의 合計金額의 균형관계의 성립을 의미한다.

다. 보험회사의 경영상 提供한 전종목의 보험에 있어서 총보험료와 보험금 총액 및 보험의 운영관

3) 申守植, 保險經營論, 貿易經營社, 서울 1992, p91

4) 上揭書, p94

5) 庭田範秋, 保險經營論, 有斐閣, 東京 1970, pp74-79

리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간의 均衡關係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종목의 보험에 있어서 赤字일지라도 다른 종목의 보험에서 생긴 黑字로써 상쇄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라. 보험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일체의 收入과 일체의 支出과의 均衡關係이다.

마. 현재의 어떤 종목의 보험이 적자일지라도 장래에 있어서 반드시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간의 경과를 거쳐 收支相等의 原則이 달성된다.

이상의 收支相等의 原則은 단일 종목의 순보험료 대 보험금 총액, 총보험료 대 총보험원가, 전종목의 총보험료 대 총보험원가, 보험회사의 총수입 대 총지출의 수지상등으로의 개념확대를 거쳐 期間 合算 收支相等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보험회사 경영의 특장상 보험가입자의 效用 充足 (公共性)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保險會計의 重要 前提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3) 投資에 관한 原則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중의 중요한 한 부분은 投資活動이다. 보험영업의 기본전제가 收支相等의 原則에 의한 것이라면 投資活動의 기본 전제는 보험회사의 경영특성중 하나인 기업으로서의 營利追求에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투자에 관한 원칙은 보험회사로서의 원칙보다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투자활동에서 요구되는 投資의 安全性, 收益性 및 分散 投資의 原則등이 보험회사의 투자활동에도 적용된다. 다만, 투자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이 보험영업에서 조달된 것인만큼 투자활동에 있어서 公익적 노력이 요구되며 보험금의 지불을 위한 支給能力의 維持가 필요하다.

3. 保險會計와 企業會計基準의 相關關係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の 會計制度에 관한 法規는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과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규칙의 위임으로 제정된 損害保險會社の 會計規定(1979년 7월 2일 제정)이 있다. 이 규정들은 보험회사의 보험영업과 관련된 會計處理基準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企業會計基準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계산을 위해서는 約款, 業務方法書등에서 정하고 있다.

保險業法과 關聯規定은 보험업법 제1조(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달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企業會計基準은 會計情報利用者の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제131조와 부칙(1990년 3월 29일) 4항에 의거 損害保險會社の 會計規定을 企業會計基準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과 손해보험회사의 회계규정과 차이점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保險會社 經營原則中 위험에 관한 원칙 및 수지균형의 원칙을 적용받으며 公共性에 입각한 경영이 요구되는 보험영업에 대하여는 保險業法 關聯 規定을 적용하고, 기업으로서 營利性에 입각하여 경영되는 투자영업과 기타 一般會計는 企業會計基準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작업별로 관련 규정이 상이한 근거의 기준에 의거 작성된 單一 財務諸表를 보험업 감독 기관의 제출용과 일반투자자를 위한 증권시장 공시용의 계산

서류로서 사용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보험감독당국의 보고목적으로 작성되는 法定財務諸表와 증권시장의 공시용으로 작성되는 財務諸表는 그 적용기준과 회계처리방법, 공시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二元化되어 있다.

法定財務諸表는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전미보험감독관회의)

에 의해 제정된 法定會計基準(Statutory Accounting Practice, 이하 SAP라 칭함)과 미국 FASB 등에서 제정 공포한 GAAP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會社의 財務會計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⁶⁾

(표-1) GAAP와 SAP

구 분	GAAP	SAP
재무제표 이용자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보고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이용자	보험회사, 감독당국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
보고 관점	경영성과의 보고	지급능력 보고
기본 가정	비용수익 대응	가능한 조기비용 처리
손익회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계약비 이연 • 예상보험금환입 평가 계상 • 대재해적립금 적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계약비 비용처리 • 보험금환입은 현금입금시 계상 • 대재해적립금 적립함
자산회계 처리	집기비품등 설비 자산처리	집기비품, 차량, 3개월초과 미수보험료, 기타미수금, 한도초과 또는 규정의 투자 자산은 자산불인정-지급 능력에 기여 못함
회계기준의 성격과 연원	회계이론, 관습, 목적에 근거하여 APB, FASB등에서 제정	많은 경우 GAAP과 일치하고 권위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회계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요구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회계처리방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GAAP의 일부로서 인정되지 않음.

6) Clair J. Galloway, Joseph M. Galloway, Handbook of Accounting for Insurance Companies, McGrawhill Inc. 1986 Colorado pp24-42 요약

이상과 같이 美國에서는 재무보고의 이용자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保險業法 關聯基準에서 보험영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企業會計基準으로 보완하여 單一 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구조하의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재무회계의 구조를 살펴 보자.

Ⅲ. 損害保險會計의 構造

損害保險會計의 構造는 크게 나누어 보험수입회계, 보험원가회계, 비상위험준비금적립회계로 나눌 수 있다. 保險收入會計는 원수보험료인식과 원수보험료배분의 두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保險原價會計는 원수보험금의 인식, 지급준비금의 계상, 원수보험금과 지급준비금의 배분, 사업비의 인식, 사업비의 배분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된 보험수입과 보험원가를 차감한 보험영업이익에서 보험업의 불확실성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非常危險準備金을 적립하게 된다.

1. 保險收入會計

(1) 收入의 認識 基準

保險料收入의 認識 基準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회계이론상 收入의 認識 基準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이론적 의미에 있어서 保險用役의 特徵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會計理論上的 收入의 개념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

어 설명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 바⁷⁾ 첫째는 수입을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資產의 流入으로 보는 관점이고, 둘째는 수입을 기업에 의해 財貨 또는 用役이 創出되어 소비자 또는 다른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즉 收入은 純資產의 流入 또는 財貨와 用役의 流出로 간주된다.

또 다른 견해로는 收入을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財貨와 用役을 생산하는 過程의 흐름으로 간주하고 있다.⁸⁾ 두가지 견해를 종합하면, 收入은 첫째 일정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期間單位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업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전제로 하고 있다.

會計理論上的 收入의 報告時期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서 Sprouse와 Moonitz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인용되고 있다.⁹⁾

“收入은 財貨와 用役의 創出과 讓渡에 필요한 중요 經濟活動이 종료되고, 이러한 활동의 結果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때 認識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 경제활동의 종료시기의 대안으로서 決定的 事件의 履行概念(Critical event concept)을 도입하고 실무적인 의미에 있어서 수입의 實現時點을 수입의 報告時點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實現의 意味는 재화 또는 용역이 소비자 또는 거래처에 인도되고, 현금, 현금청구권, 또는 기타의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때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收入의 報告時點을 收入의 實現時點으로 보는 實現主義에 입각하여, 생산 및 판매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¹⁰⁾

7), 8), 9), 10)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Richard D. Irwin Inc. Illinois, 1982. pp173-187

〈표-2〉

實現主義에 입각한 經濟活動別 收入報告時點

수입보고시점	기 준	예 시
생산기간중의 보고	계약 또는 일반영업관행상 약정가격이 존재하거나 생산단계별 시장가격의 존재	기간수입의 발생에 따른 계상, 장기계약수입, 가치 증분
생산완료시 보고	결정적인 판매가능가격 또는 시장가격의 존재와 중요하지 않은 판매비용	귀금속, 농작물, 용역
판매시점 보고	설정된 제품가격의 존재, 회수가능금액의 합리적 추정가능, 모든 중요비용의 추정가능	대부분의 상품매출
현금회수시점	입수된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고 중요한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판매시점에 정확히 추정될 수 없을 때	할부판매, 검증가능한 가격결정 없는 고정자산의 교환

이상의 實現主義에 입각한 생산형태별 수입의 보고시점을 요약하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유입되는 資産增加額의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原價의 측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험계약의 경우 原受保險料의 金額은 보험계약시 확정되나 保險原價는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계이론상의 保險收入의 계상시기는 보험기간만료시가 타당하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영상 同一 種類의 危險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多數의 法則이 성립하고, 개별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단일 위험에 의한 保險會社의 損益效果를 분산하고 있다. 또한 保險會社의 意思決定過程에서 기간영업성과의 분석, 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의 유지, 주주의 배당에 필요한 재무정보의 산출을 위해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전에도

期間損益 計算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보험회사 경영상의 필요성과 다수위험 보유와 위험분산이라는 기술적인 보완으로 保險收入은 부보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실현되는 期間收益으로 간주된다. 보험수입을 기간수입으로 처리함에 따른 財務會計上의 不確實性은 제반 적립금의 보수적인 적립으로 보완하고 있다.

보험회사 경영상의 필요성과 보완된 준비금의 적립등으로 保險收入의 認識基準을 부보기간의 경과에 따른 期間收益으로 볼 때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인수시에 계약자로부터 입금하는 原受保險料는 先受收益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수익으로서의 보험수입은 보험의 인수와 더불어 계상되는 原受保險料의 認識過程과 인식된 원수보험료를 계약된 危險의 配分機關(타보험사 또는 재보험회사)별로 배분하는 과정과 약정기간의 경과에 따른 期間別 配分過程을 통하여 확정된다.

(2) 原受保險料의 認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자가 납입하는 原受保險料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선수수익에 해당되나 그 先受收益의 성격은 일반기업의 그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 원수보험료는 일정기간의 약정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유일한 대가로서 보험료의 선지급만으로 契約의 有効性을 담보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일에 있어서도 일시납입 계약과, 장기간 분할 납입 계약 등이 있다. 따라서 原受保險料收入의 認識 時期도 보험료납입조건과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 一時納入 契約의 原受保險料의 認識 時期

일반적으로 短期保險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보기간 개시전에 보험료의 납입이 요구되며 보험료의 납입과 동시에 계약이 발효된다. 따라서 단기계약보험이 일시납입보험계약의 경우 現金基準에 의해 原受保險料가 인식된다. 다만 계약자와의 약정에 의해 신용(예; 적하보험)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실제 保險契約締結日에 원수보험료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分割納入契約의 原受保險料 認識 時期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중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滿期還給金이 보장되어 있는 장기종목의 경우와 일부 단기계약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조건이 分割納入으로 계약되고 있다. 이 경우 최초보험료 납입시 長期 契約은 성립하나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료 납입기일에 발생하므로 계약상의 납부기일에 원수보험료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 共同引受 契約의 原受保險料 認識 時期

원수보험에 대한 共同引受契約은 사전 약정에 의해 보험계약을 협회에서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

으로 위험이 사전에 분산된 형태의 거래이다. 이 거래의 특징은 국내의 보험시장상 大數의 法則이 적용될 만큼의 거래건수가 부족하고 손해발생시 大體의 損害가 발생될 경우로서 원수보험회사간에 약정된 비율에 의거, 위험을 인수하게 된다. 이 거래의 인식은 협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각 공동인수회사에 통보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3) 原受保險料의 危險 引受 機關別 配分

(再保險 去來)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위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의 보험”이라고 불리는 再保險去來를 통하여 타보험회사로 분산시킬 수 있다. 즉 재보험 거래를 통하여 각 원수보험회사에서 인수한 한정된 거래의 다양한 危險規模를 다수의 평균적인 위험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재보험거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任意再保險(Facultative reinsurance) : 원수보험회사에서 인수한 보험계약의 매 건별로 보유할 금액과 출재할 금액을 협상하여 再保險契約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원수보험회사가 인수할 계약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경우 사전에 재보험사의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개별계약의 위험을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보험계약체결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自動契約締結制度를 채택할 수 있다. 즉,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標準再保險契約을 체결하여 留保率과 最高 出再金額을 정하고 한도이내의 모든 거래는 자동적으로 재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수 있다.

— 特約再保險(Treaty reinsurance) : 特約再保險契約은 약정된 종류의 위험에 대해 계약회사간

의 자동적으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재보험계약에는 附保範圍와 金額限度가 명시된다. 임의재보험계약과는 달리 개별계약에 대하여는 협상되지 않는다. 특약재보험은 원수보험회사가 정해진 방법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원수계약을 체결하고 재보험회사는 정해진 한도범위까지 再保險을 인수한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한다.

－ 超過損害再保險 (Excess loss reinsurance) : 초과손해재보험에는 보험계약당 超過損害에 대한 再保險과 總原受去來의 總超過損失金에 대한 再保險으로 나누어진다.

재보험거래로 인한 再保險料와 受再保險料는 전적으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간에 사용되는 계산서(Bordereaux)에 의존하여 인식된다. 회사간의 자금 청산은 순간액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과목별 계산은 總額主義에 의하여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4) 原受保險料의 附保期間別 配分

(未經過 保險料의 계산과 적립)

원수보험료가 선수수익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인식된 原受保險料는 실현기간에 걸쳐 收入으로 인식되고 미실현된 수익은 移延處理되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의 기간손익 계산에서 이연처리되는 원수보험료를 未經過保險料 積立金이라고 하며 이는 부채나 적립금의 성격을 갖는게 아니라 移延收益의 성격을 갖게 된다.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의 계상대상에는 原受保險料, 再保險料 모두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의 會計規定 제7조에는 보험종목별 미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自動車保險 및 保證保險 : 매 계약건별 일할 계산 방법
2. 受再保險 : 출재보험회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3. 船舶保險, 航空保險, 勤勞者 災害補償責任保險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험료의 20% 해당액(정률법)
4. 積荷保險 : 대차대조표일 이전 3개월간의 보유보험료
5. 運送保險 및 海外旅行者 傷害保險 : 대차대조표일 이전 1개월간의 보유보험료(기간보험료법)
6. 長期貯蓄性損害保險 : 24분의 1분법에 의한 일할 계산
7. 生命保險 :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방법(정률법)
8. 海外受再保險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의 40%(정률법)
9. 其他 : 24분의 1분법에 의해 일할 계산

이상에서 保險收入會計에서 원수보험료의 인식, 위험인수 기관별 원수보험료의 배분(재보험거래), 원수보험료의 부보기간별 배분(미경과 보험료의 적립)과정을 검토하여 保險收入의 實現過程을 설명하였다.

2. 保險原價 會計

보험료의 구성이 純保險料 附加保險料, 貯蓄保險料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원가는 보험료수입의 각항목에 대응되는 원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순보험료에 대응하는 發生損害額, 부가보험료에 대응하는 事業費, 저축보험료에 대응하는 還給金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保險原價

會計는 지급보험금 및 지급준비금의 발생과 배분에 따른 발생손해액의 계산, 사업비의 발생과 배분, 환급금의 계상으로 이루어진다.

(1) 發生損害額의 計算

보험수입의 인식 기준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보험수입에 대응하는 保險原價의 발생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보험수입의 실현은 附保期間의 終了時點이 되어야 하나 여러가지 보험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감안하여 期間收益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수입을 부보기간에 걸쳐 인식함에 따라 원가를 효과적으로 수입에 대응시키기 위한 과정이 發生損害額의 會計節次이다.

발생손해액의 계상은 保險事故의 發生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보험사고의 처리상태에 따라서 支給保險金과 支給準備金으로 인식 계상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지급보험금의 확정시까지의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지급보험금이 확정되면 지급보험금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으로 계상시에는 동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금액이 조사되기 이전으로서 推定에 의해 계상되며 支給準備金의 추정금액의 다과에 의거 보험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급준비금의 計算方法은 보험영업회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지급보험금의 발생과 배분, 지급준비금의 계상과 배분으로 나누어 논한다.

1) 支給保險金の 計上과 配分

原受保險金の 계상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損害調査가 終了하고 保險金支給額이 確定되었을 때 확정된 금액을 원수보험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한 보험계약의 위험분산으로 출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再保險金으로서 지급보험금의 조정항목으로 계상되며 아울러 타원수보험사에서 인수한 受再保險 去來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수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보험금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중요한 지급보험금의 조정항목으로서 保險金の 還入項目이 있다. 이 보험금의 환입은 보험금의 지급 후 殘存物의 賣却, 求償權의 行事 등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서 현재는 실무적으로 현금으로 회수되었을 때 인식하여 계상하고 있다.

美國의 法的 財務報告에서는 보험금의 환입은 現金回收基準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FASB #60에 의한 財務報告書는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보험금의 계상시 잔존물처분 또는 구상권 행사로써 회수가능한 금액(예상부수비용 차감)을 支給準備金 또는 支給保險金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¹¹⁾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保險金 還入金額의 認識時期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회수기준으로 처리했을 때, 기간손익 계산의 왜곡의 여지가 있고, 잔존물 또는 구상으로 인한 유입자산의 처분기간이 길 때에는 상당히 장기간 부의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 支給準備金の 計上과 配分

支給準備金은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부터 보험금 확정시까지 保險營業의

11) FASB 보고서 #60 Paragraph 18

期間損益 計算과 기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負債性充當金이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의 계상에는 합리적인 추정과 충분성이 요구된다.

지급준비금의 계상범위로서 保險金支給 事由가 발생한 거래의 범위와 지급해야 할 금액적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損害保險會社 會計規定 第5條에서는 지급준비금의 계상대상으로서 既報告 發生損害額과 未報告 發生損害額으로 구분하여 적립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때 기보고 발생손해액은 保險事故件別評價(자동차보험의 경우 개별평가금액과 평균보험금 지급방식에 산출된 금액중 큰 금액)에 의해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해서는 經過保險料의 一定比率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既報告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두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적극적인 보고행위가 있는 거래로 해석할 수 있고 둘째, 확장된 범위로서 보험회사가 인지한 보험사고 발생거래로 해석할 수 있다. 支給準備金の 계상이 充分性을 요구하고 있으며, 保險業法 施行規則 제21조(責任準備金の計上) 1항 2호에서 지급준비금의 계상대상으로서 “보험금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保險金支給金額이 未確定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보험사고의 발생이 인지된 경우는 既報告發生損害額과 같이 개별추정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급준비금 계상대상이 되는 금액으로서는 保險金 精算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법률비용, 손해사정인 수수료등)이 支給準備

金에 계상되어야 한다.

지급준비금의 計上方法에는 보험종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다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個別推定法: 보험사고가 발생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급될 보험금과 부대비용을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서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自動車保險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나. 過去經驗率에 의한 總額推定方式: 이는 개별추정법이 모든 거래단위별로 추정해야 하는 업무의 번잡성을 피하고 다수 거래의 계약으로 대수의 법칙이 성립함으로 統計的 技法을 사용하여 지급준비금을 추정하는 방법이며 이는 다시 다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a. 最終 發生損害額 豫測方式: 어느 연도의 인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損害額은 支給準備金과 支給保險金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과거의 보험건수와 손해발생액을 기준으로 보고년도의 총예상 손해액을 추정한 후 지급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준비금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b. 平均損害額 積立方式: 개별법의 추정금액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平均損害額을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總平均損害額積立方式(과거 보험금 청구건당 평균손해액에 기말 미해결 손해건수를 곱하여 계산), 經過期間別 平均損害額積立方式(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요소별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會社의 會計規定에서는 自

動車保險의 支給準備金으로서 個別推定法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 過去 5年間 平均支給保險金 방식에 의한 추산액중 많은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가와 나의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經過保險料에 一定率을 곱하여 적립하는 방식: 이 방법은 既發生 未報告 保險事故에 대한 지급준비금 계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會計規定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여 기발생 미보고 보험사고에 대한 支給準備金으로서 과거 1년간의 經過保險料의 3%의 해당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支給準備金 計上の 適正性 問題

支給準備金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지급해야할 債務로서 期間原價로 인식되어야 할 금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여부는 期間營業損益과 支給能力의 確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으로 과거의 경험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과거의 추세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된 지급준비금이 적정한지 검증하여야 한다. 이의 검증 방법으로는 統計的인 技法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도 있고 재무회계상 개별사고별로 기적립된 금액과 실제 지급보험금을 검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적적으로 다수의 거래를 검토하여 지급준비금의 추정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支給準備金の 調整

미국 FASB #60 Paragraph 18 에 의하면 “支給準備金은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을 수정하는 다른 요소를 사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청산하는데 추정되는 最終原價(물가상승효과와 사회경제적 요소 포함)에 기초하여

야 한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의 결과 保險金原價의 추정이 변경되거나 보험금추정금액과 실제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정이 변경된 회계년도 또는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會計年度의 損益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잔존가치, 대위변제, 부동산에 대한 잠재소유권과 같이 未精算保險金の 推定回收金額은 추정순실현가치의 관점에서 지급준비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支給準備金の 계상시에는 物價上昇效果를 고려해야하고, 둘째, 지급준비금의 적립액과 실제보험금의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支給時點의 損益으로 계상하고, 셋째, 예상되는 保險金還入額은 純實現價値基準으로 평가하여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준비금계상금액과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인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현재 회계처리방법과 차이가 없으나, 支給準備金 計上에 物價上昇率의 효과 고려와 保險金還入 豫想額의 支給準備金 差減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

－ 支給準備金の 配分

계상된 支給準備金은 원수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간의 原受保險料 引受比率(위험인수 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어 진다. 보험회사간의 배분금액에 있어서는 원수보험사의 計上金額을 신뢰하고 원수보험사의 통보에 따라 支給準備金을 계상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の 會計規定上 해외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처리하여 未報告 發生損害額에 대한 준비금으로 海外出再者로부터 통보된 금액과 既報告發生損害額의 10% 해당액중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2) 長期貯蓄性保險料 積立金の 積立과 還給金の 計上

1) 長期貯蓄性保險料 積立金の 積立

一般 損害保險의 보험료가 純保險料와 附加保險料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長期貯蓄性保險料는 貯蓄保險料, 純保險料, 附加保險料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다른 손해보험종목과 동일하나 貯蓄保險料는 보험료로서의 수입성격보다는 만기시 또는 중도해약시 지급해야하는 豫受金の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계의 구조상 환급금은 貯蓄性保險料에 대응하는 원가로 처리되고 있으며 기일이 경과한 장기저축성보험료중에서 결산일 현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負債는 보험원가항목으로서 長期貯蓄性保險料 積立金으로 계상해야 한다. 장기저축성 보험료의 實現收入과 未經過과 保險料, 長期貯蓄性保險料 積立金の 관계는 다음표와 같다.

〈표-3〉 長期貯蓄性保險의 保險料 構成

금 액	부가보험료(1)	(4)
	순 보험료 (2)	(5)
	저축보험료(3)	(6)
	보험료 납입일	결산일 보험료 납입일

상기 그림에서 보면 (1)+(2)는 實現된 保險收入이 될 것이며, (4)+(5)+(6)은 未經過 保險料 積立金으로서 보험료수입을 차감하고, (3)은 長期貯蓄性保險料 積立金으로서 보험원가항목을 구성할 것이다.

다만 현재 채택하고 있는 계산방법(전기 Zillmer 보험료 적립금 계산방법)에 의하면, 상기 그림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貯蓄保險料, 純保險料, 附加保險料의 발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 초반기에 新契約費가 발생함으로서 실제 부가보험료의 소요가 많으므로 총보험료중 부가보험료를 계약초기에 많이 배분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영업수지상으로는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나 계약초기에 契約을 解止하는 계약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新契約費의 移延이 인정되는 않는 회계제도하에서는 비용수익의 대응 목적상이 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로 損害保險會社의 會計 規定(제6조)상의 長期貯蓄性保險料의 적립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종목의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상한 금액. 이경우 적립금이 0보다 적은 때에는 0으로 하며,

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실효된 계약중 復活權 留保期間이 경과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가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復活率을 곱한 금액.

2) 長期貯蓄性保險 還給金の 計上

장기저축성보험 환급금은 長期貯蓄性保險의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약시 지급하는 滿期還給金과 解約還給金으로 구성된다. 위의 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결산일 현재 부채로 적립된 長期貯蓄性保險料 積立金中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따라서 매결산기마다 貯蓄保險料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기저축성보

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므로 실제 환급금 지급시에는 최종 결산일 이후 추가입금된 보험료의 貯蓄保險料部分만 추가적인 보험원가항목을 구성한다.

(3) 事業費 會計

손해보험회사의 事業費는 보험료의 附加保險料에 대응해서 발생하는 經費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계약의 유지, 위험의 분산, 보험금의 지급등과 같이 보험영업에서 발생하는 諸般 經費를 말한다. 事業費會計의 비용 인식 기준이나 측정방법에서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과의 차이가 없다. 다만 보험업무상 出再去來(위험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受再經費와 受再預託金利息등을 지급경비와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는 總額主義의 회계처리방법에는 일치하지 않으나 대체로 수입사업비가 지급사업비의 조정항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비중 新契約費는 신계약의 체결,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례수당, 접포운영비, 판매촉진비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新契約費의 効果는 해당 보험계약의 기간에 걸쳐 효익을 제공하는 先給費用 또는 在庫資産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신계약비의 미래효익에 대한 資産性이 인정되고 보험료수입의 기간배분 비율에 따라 신계약비를 移延處理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FASB #60의 Paragraph 28-29에 따르면 “保險의 新規契約과 更新契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手數料와 附帶原價(보험인수와 계약서 발행 담당자의 급여,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조사비등)를 신계약원가로서 資本的 支出로 처리하고, 보험료

수입 인식비율에 따라 費用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新契約原價를 보험료 수입과 관련시키기 위해서 신계약원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방법,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방법, 보험계약의 이익률 측정방법등에 따라 保險契約의 種類別로 配分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損保社의 事業費 會計處理는 미국의 SAP(Statutory Accounting Practice)와 같은 입장에서 移延處理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事業費會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의 保險種目別 配分問題이다. 보험료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附加保險料率의 適正性 與否는 각 종목별로 발생한 사업비의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의 영업과 업무성격에 따라 적절한 事業費 配付基準을 설정하여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事業費의 配分은 먼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 대한 費用配分에서 출발한다. 투자영업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인 유가증권 취득 및 매각 수수료, 증권거래세등은 投資經費로서 계상하는데 異論이 있을 수 없으나 공통경비로 지급되는 투자자산 운용 직원의 급여는 투자경비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의 재무회계상으로는 保險營業과 投資營業에서 발생한 經費를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非常危險準備金の 積立

貸借對照表上の 非常危險準備金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장래 예상되는 大型保險事故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負債性 充當金이다.

미국 FASB 보고서 #5(Accounting for Contingency)에 의하면 負債性充當金으로 측정, 계상될 수 있는 불확실한 未來事件의 조건으로는 1)대차대조표일 현재 재산이 損傷되거나 負債가 발생할 可能性이 있을 때, 2)예상되는 손실이 合理的으로 추정이 가능한 때이다.

이러한 조건에 貸借對照表上的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이 일치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會計規定上的 非常危險準備金の 계상방법과 사용시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會計規定 제8조(비상위험준비금) 1)非常危險準備金は 經過保險料에 營業利益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長期貯蓄性保險은 적립대상에서 제외한다. 2)제1항의 營業利益率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frac{\text{경과보험료}-\text{순보험금}-(\text{순사업비}-\text{교육세 해당액})}{\text{경과보험료}} \times 100(\%)$$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營業利益率이 20%를 초과할 때에는 20%로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決算결과 缺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決算예상액의 한도내에서 해당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非常危險積立金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配當所要金額의 한도내에서 당해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非常危險準備金の 50%해당액까지 감액하여 적립할 수 있다. 5)非常危險準備金は 利益剩餘金을 초과하는 決算의 보전을 위한 경우 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非常危險準備金の 계상방법에서 보면 비상위험준비금은 장기보험이외의 보험종목에서 保險營業利益을 積立한 것이며, 그 사용방법 또한 決算의 전보를 위해 환입할 수 있으므로 규정상의 계상과 사용방법에서 보면 利益剩餘金の 法定積立金 積立 및 還入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1988년 3월 현행 會計規定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損害保險會社の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에서는 제14조의 비상위험준비금 계상방법으로 기초서류중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상의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계상방법에 따라 계상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保險營業利益率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사용방법으로는 매 위험당 또는 단일 사고당 10억원 이상의 즉시불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인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전 규칙상의 非常危險準備金は 大型事故의 保險金 支給 目的으로 적립함으로써 미국 SAP에서 요구되는 大災害損失積立金(Catastrophic reserve)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3월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損害保險會社の 會計規定으로 개정되면서 비상위험준비금 계상방법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방법서에 의한 적립방법을 제외하고 대형보험사고 발생시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사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大災害損失積立金보다는 保險營業利益의 法定積立金の 성격을 가지나 그 처리방법에서는 決算완료전 잉여금의 事前處分 型式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 使用方法에서 보험회사 決算상 배당금

을 위한 剩餘金 確保를 위해 輕減積立이 허용되고 缺損補塡를 위해 還入 使用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성충당금의 표시와 그 적립 및 사용방법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논리의 충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액에 있어서 회사의 결산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期間損益의 評價와 會計處理의 繼續性 原則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상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간손익의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 非常危險準備金の 計上方法은 두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非常危險準備金の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 보험영업회계상의 대재해 손실에 대한 負債性充當金으로 계정성격을 확정할 경우 과거의 대형 보험사고의 경험과 현재의 추세와 기타의 추세를 감안하여 계상방법 및 사용방법을 정하고 계속 적용하여 회계처리나 기간손익계산의 自意性을 排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非常危險準備金の 성격을 보험회사 資本 充實의 입장에서 법적인 지원 차원에서 제공되는 적립금으로 규정될 경우 이를 잉여금의 적립형태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여 자의적으로 계상되고 환입되는 非常危險準備金이 期間損益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기업회계상 인정되고 있는 租稅減免規制法上的 제반 적립금의 회계처리와 동적립금을 잉여금의 일부로서 분류하고 있는 방법이나, 企業合理化積立金과 같은 법적적립금의 처리방법을 따르면 될 것이다.

IV.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 會計制度와 미국 FASB 보고서 #60 및 #97과의 比較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會社의 財務會計制度의 고찰에 있으므로 미국의 GAAP로 인정되는 FASB 보고서 #60과 #97과의 자세한 비교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 會計制度가 미국의 GAAP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손해 보험 회계제도의 현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손해보험의 保險營業會計를 중심으로 요약 비교한다.

(표-4) 우리나라 損保會計制度和 美國 FASB #60, #97(損保部分)의 比較

항 목	우리나라 손보회계제도	미국 FASB #60, #97(손보부분)
1 관련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	FASB #60, 97 및 기타의 FASB보고서
2 생명보험과의 관계	생명보험 별도 규정 등	손해보험 생명보험 동시 규정
3 목 적	보험계약자 보호위한 지급능력 보고와 기간 경영성과 보고	기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보고
4 정보이용자	보험감독자, 일반정보이용자	일반정보이용자

	항 목	우리나라 손보회계제도	미국 FASB #60, #97(손보부분)
5	보험계약의 분류	단기계약 장기계약 : 부보기간 1년이상이고 저축성 보험료 포함	단기계약 장기계약 : 취소불능계약, 갱신보장계약과 같이 계약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동안 서비스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6	보험수입인식	단기 : 계약체결시 장기 : 지급기일 도래시, 원수 보험료 계상하며 모두 실현기간에 따라 계산	좌동
7	보험원가 - 지급준비금	규정에 의거 계상 물가변동 고려조항없음 보험금환입 현금입금시 계상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관련 채무 계상. 장기미정산의 경우 물가상승효과 고려, 보험금환입에상액 차감.
	- 신계약비	발생시 비용처리	부보기간에 걸쳐 이연 후 상각
	- 보험료부족	계산근거 없음	예상지급준비금, 관련비용, 계약자배당금, 미상각신계약비, 유지비 합계가 미경과보험료초과시 보험료부족액을 부채로 인식
8	비상위험준비금	규정에 의거 적립	적립조항 없음
9	부 동 산	운용자산의 부동산으로 표시	용도에 따라 투자자산, 영업용 부동산으로 구분 표시
10	공시사항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차이 공시. 기타 자세한 사항 규정없이 기업회계기준 따름.	FASB #60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금추정기준 • 당기 가정투자수익률의 평균과 함께 보험료적립금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 • 이연신계약비의 성격과 상각방법 및 당기 상각액 • 재무제표에 현재가치로 표시된 단기계약분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금 할인에 사용된 이자율의 범위 • 단기계약관련 보험료부족의 계산에 예상투자수익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재보험거래의 성격과 중요성 • 주주지분, 법정자본금, 잉여금 및 회사의 SAP 적용에 따른 배당금지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자본금과 잉여금 - 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법정자본금과 잉여금 - 배당금지급에 제한이 있는 잉여금의 성격과 금액

V. 우리나라 損害保險會計制度의 改善 方向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業法, 施行規則, 損害保險會社의 會計規定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會計制度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손해보험 회계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서는 미국 SAP와 FASB 보고서 #60 및 #97의 일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고의 논의내용을 요약하여 우리나라 損害保險會計制度의 改善方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의 會計規定은 대체로 美國의 法定會計基準(Statutory Accounting Practice)의 회계처리 방법과 유사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호입장에서 보험회사의 支給能力 維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간손익의 적정계산보다는 保守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利害關係者에는 보험계약자이외에 투자자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기간 경영성과의 평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현재 회계규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보수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회사의 期間計算의 適正性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損害保險會計制度 改善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 非常危險準備金の 概念 定立과 表示 方法의 檢討

전술한 바와 같이 非常危險準備金の 計定 성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표시방법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있어서 논리적인 상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會計處理의 繼續性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정성격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非常危險準備金の 성격을 장래의 豫定損害率을 초과하는 손해를 대비하거나, 대형보험사고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負債性充當金으로 개념이 정립될 경우 과거의 경험자료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한 계상방법이 확립되어 계속 적용함으로써 期間 經營成果의 계산에 自意性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상위험준비금을 손해보험회사의 財務構造健全化를 위한 지원으로서 정책적인 法定積立金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현행 租稅減免規程法上的의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적립금 계상방법 또는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같은 法定積立金 積立方法으로의 처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保險金還入의 認識

보험금 지급 후 잔존물의 매각, 구상권의 행사 등으로 회수되는 保險金 還入額은 현금 입금시 支給保險金 差減項目으로 계상된다. 일반 원수보험회사의 기간계산에서 보험금환입액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크지 않으나 保證保險의 경우 求償權의 行事事로 이루어지는 보험금환입액은 기간 경영성과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殘存物 流入과 求償權 行事事로 확보된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회수시까지 계상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부의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기간 계산의 관점에서는 잔존물의 유입 또는 구상권의 행사로 財產權이 확보될 경우 純實現價額을 평가하여 支給準備金 또는 支給保險金の 差減 項目으로 계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법 97조 準備金

非常危險準備金과 마찬가지로 법 97조준비금의 성격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험업 법상의 계산 및 사용방법으로 추정하면 負債性充當金の 성격보다는 剩餘金の 적립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法定積立金の 적립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事業費의 配分

사업비중 新契約費는 그 효익이 부보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收益 費用 對應의 原則에 의거 신계약비의 이연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손해보험 상품이 대체로 短期種目인 점과 保守主義의 입장에서 신계약비를 발생시 비용처리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의 성과 측정에 있어서 투자영업과 관련되는 人件費와 間接經費의 配分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을 공공성에 입각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保險營業과 영리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영업의 경영성과는 구분되어 측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投資營業에서 발생하는 間接經費는 投資營業收益에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附加保險料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험영업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종목별 배부 역시 적절한 기준에 의거 배부하고 이의 결과가 附加保險料 計算의 適正性 檢討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 保險營業利益 決定構造의 改善

서두에서 보험회사 경영의 원칙으로 危險에 관한 原則, 收支에 관한 原則 및 投資에 관한 原則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칙 중 보험영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위험에 관한 원칙과 수지에 관한 원칙이 있다. 수지에 관한 원칙은 收支相等의 原則으로 요약되며 만약 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절히 이행된다면 각 손해보험회사의 保險營業利益은 평균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과거 수년간의 損益計算書를 분석하면 모두 상당한 금액의 保險營業損失을 기록하고 있으며 投資營業利益의 補充으로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가 수지상등의 원칙에 미달하는 보험료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손해보험회계가 구조적으로 損害保險營業 結果를 적절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의 종목별 보험요율은 豫定損害率과 實際損害率을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요율이 실제손해율보다 낮아서 보험영업손실을 기록한다고 보기보다는 損害保險會計 構造上的 問題로 판단된다.

保險營業損失을 기록하게 되는 保險會計構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非常危險準備金の 積立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이 대차대조표상 負債性充當金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적립과 사용방법에 있어서 保險營業利益의 사전 적립 방법을 택하고 있다.

둘째, 保險金 還入計定の 認識 遲延이다. 구상권 행사 잔존물 매각 등으로 이루어지는 保險金 還入이 실제 재산권을 확보한 후 현금으로 입금될 때까지 계상되지 않고 부의자산 형태로 유지된다.

셋째, 장기보험료에 반영되어 있는 豫想投資收益이 실제 발생후에는 投資營業收益으로 기록되거나 관련 원가는 保險原價에 기록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들로해서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의 保險營業部門은 항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험영업의 실질적인 經營成果를 측정 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부문을 제외한 保險營業成果만의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保險營業成果의 적절한 측정을 위해서 앞서 제안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公益性을 위해 법적으로 작성되는 財務諸表의 會計處理 方法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미계상된 예상 보험금 환입금액과 투자영업수익으로 계상된 장기보험료부분의 예정투자수익금액, 투자영업에 사용된 인건비, 간접비등을 財務諸表에 대한 주석등에서 공시하여 실질적인 保險營業成果의 公示가 요청된다.

參 考 文 獻

- 方甲洙, 最新保險學, 博英社 서울 1990.
韓東湖, 保險學, 博英社, 서울 1971.
申守植, 保險經營論, 貿易經營社, 서울 1992.
Clair J. Galloway, Joseph. M. Galloway, Handbook of Accounting for Insurance Companies McGrawhill Inc. 1986 Colorado.
AICPA, industry audit Guide—Audits of Fire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ies AICPA 1982. New York.
FASB Statement #60 and #97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Richard D. Irwin Inc. Illinois 1982.
庭田範秋, 保險經營論, 有斐閣, 東京 1970